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3개월분 임대료 면제, 선착순 동호지정)

【입주자격완화·선착순 동호지정·선계약후검증·일반계층 추가·월 임대료 할인·계약금50만원)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10.28.(수)

1. 건설위치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 블루동로2길 25 (공당리)

- LH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별상황 등에 대한 의사소통 오류로 관련사항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종전 선정지위 자동탈락)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고는 미계약 및 해약세대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추가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 **신청자가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당일 계약 체결하고 계약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先(선)계약 後(후)검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적격자에 한하여 입주 가능합니다.**
- **아래 내용은 금회 모집 관련 요약사항이오니, 반드시 공고문 전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동호지정) : '26.11.10.(화), '26.11.24.(화), '26.12.8.(화) 오후 14시~16시**

■ **신청 및 입주자 선정 절차**

절차	견본주택 방문	→	서류 준비	→	동호 지정 → 서류 제출 → (가)계약 체결	→	자격검증	→	계약자 개별안내 (본계약)
일시	11.3.(화)~12.8.(화) (10:00~16:00) * 점심시간(12:00~13:00)제외 * 주말/공휴일 가능	→	신청일 발급분	→	신청접수 화요일(당일) 11/10, 11/24, 12/8 14:00~16:00	→	약2-8주 소요	→	입주 확정
	<견본주택>		<서류접수>						
장소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경북동부권주거복지지사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4, 무진빌딩 3층)						

- **동호지정(선택) 순번 결정 방법**
 - **당일 14시 이전 도착자 :** 14시에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 결정 후 순번대로 원하는 동호를 선택
 - **당일 14시 이후 도착자 :** 도착 순서대로 원하는 동호를 선택

• **<u>신청접수 화요일 동호지정(서류제출, 계약금 입금) 및 계약체결</u>**
- **동호지정 및 계약장소 : LH 경북동부권주거복지지사(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4, 무진빌딩 3층)**
- **계약금 50만원**(신청형별 구분 없음)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 **신청 시 준비사항(미비 시 신청 및 계약 불가)**
- **계약금 50만원** : 입금계좌는 현장에서 안내하며, **<u>현장에서 현금 수납 불가</u>**
- **신청서류 일체** : **<u>신청일 이후 발급서류</u>**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5.신청서류] 참고
- **신분증**(배우자 및 기타 대리인 신청 시 [5.신청서류] 참고하여 추가 확인서류 구비)

• **견본주택(샘플하우스) 모집형별 각 1호 운영**

21A(빌트인)	26A	26B(주거약자)
303-602	303-607	303-505

- 신청자의 주택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견본주택을 운영합니다.

■ 입주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10.28.(수)이며,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은 신청자의 신청접수일입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신청접수일 당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무주택·소득·자산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청년
- 청년 : 신청일 당시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신청일 당시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이거나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③ 고령자
- 신청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

④ 산업단지근로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포항시) 또는 연접지역(경주시, 영천시, 청송군, 영덕군)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사람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

⑤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대상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가구원 수 1명은 170%, 2명은 160%)이하이며 통합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격 완화요건(금회 모집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세부자격요건은 [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참고)**
*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대상자는 완화 제외

계층	구분	완 화 내 용
청년,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	소득 요건	**배제** * 청년계층 임대조건 부과유형 결정 등을 위해 소득 조회 시행
	총자산 요건	**배제**
	자동차 요건	**계층별 자동차가액 기준 적용** * 자동차가액 기준 금액은 [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참고
	무주택 요건*	**해당지역에 주택이 없을 경우 허용하고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기간 요건	**청년계층 :** 소득 업무 종사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 혼인기간 **10년 이내**거나 자녀연령 **9세 이하** **한부모가족 :** 자녀연령 **9세 이하**면 가능
통합공공임대 일반		완화 제외

※ **무주택 요건 상세기준**

- **(소형·저가주택)**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6억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 **(해당지역에 주택이 없는 경우)** 자격검증 범위에 속하는 세대원이 해당 주택건설지역(포항시)에 주택이 없는 경우

■ **월 임대료 할인**

- 금번 공고를 통해 입주한 사람의 경우 **입주일이 속한 해당 월부터 3개월분**(입주 날짜와 관계없이 입주일이 포함된 해당 월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임대료 지급 채무를 면제**합니다. (예시: '26.12.20일에 입주한 경우 '27.02월까지 임대료 면제)
- 계약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것이 아닌 임대료 지급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이므로 형별 임대조건이 상이함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 않으며, 전환보증금 납부 세대의 경우 조정 후 임대료만큼만 지급 채무 면제되고 전세 전환하여 계약 체결하는 세대의 경우 별도의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격 완화에 따른 재계약 요건** (상세내용은 [7. 유의사항 참고])

- **금번 공고를 통해 입주자격 완화(소득·총자산배제)로 계약한 사람의 경우** 1회차 재계약은 가능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자가 없는 경우 2회차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임대조건 할증 없음**)
- **금번 공고를 통해 입주자격을 완화(무주택요건)하여 계약한 사람의 경우** 신청일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2회차까지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3회차 이후 재계약시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한 경우는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 금번 공고로 **통합공임 일반 공급 대상자로 입주한 사람의 경우** 1회차 재계약은 가능하며, 2회차는 행복주택 일반공급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예비자가 없는 경우 재계약 가능합니다.**(임대조건 할증 있음)**

2. 신청·계약 절차 및 입주안내

신청접수기간(동호지정·계약)

2026.11.10.(화) ~ 2026.12.08.(화) 기간 중 격주 화요일 실시

*** 오후 2시 ~ 오후 4시**

일정	절 차	장 소	일정 등 상세내용
11.3.(화) ~12.8.(화) 매일, 주말가능	**주택열람** (선택사항)	포항블루밸리 관리사무소 →지정된 동호 안내	• 주택열람 시간 **10시~16시**(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공휴일 및 주말 가능 **※ 지정된 동호 외 열람불가**
	⇩		
	신청서류(계약) 준비 *** 신청접수 당일 발급분**	각 서류별 발급처	• 자세한 구비서류는 [**5.신청서류**] **참고** **※ 기본서류 미비 시 계약불가**
	⇩		
11.10.(화) 11.24.(화) 12.08.(화) 신청접수 화요일 14시~16시	**동호지정**	**LH** **경북동부권주거복지지사**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4, 무진빌딩 3층)	• **신청접수 화요일 (14:00~16:00)** • 14시 이전 도착자 **대기명부 작성 후 순번 추첨** • 14시 이후 도착자: **도착순서대로 접수대장 작성** • 순번에 따라 잔여세대 중 계약을 희망하는 동호 지정(공가세대 동호판 참고)
	⇩		
	접수대장 및 청약신청서 작성		• 동호지정 후 접수대장 및 청약신청서 작성
	⇩		
	계약금 입금	은행·ATM·스마트폰 통해 입금 **(현장 현금수납 절대불가)**	• **동호지정 당일 (14:00~16:00)** • 안내받은 계좌번호에 **계약금 50만원** 입금 (입금자명에 계약자본인 성명 기재) 예시) 홍길동 **※ 계약금 미입금 시 계약불가**
	⇩		
	서류제출 및 (가)계약체결	**현장 (가)계약**	• **동호지정 당일(14:00~16:00)** **※ (가)계약서 작성 후 자격검증 적격 후 본 계약서 작성**
	⇩		
약 2-6주	**입주자격 검증**	정부전산시스템	• 신청자의 입주자격 적격여부 확인
	⇩		
약 2주	**부적격자 소명**	우편안내 (부적격자에게 개별 통보)	•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 소명 **※ 소명 불가시 입주 불가능(계약해지)**
	⇩		
계약자 개별안내	**본 계약체결 이후 잔금납부 및 입주**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 **입주지정기간 45일(입주전까지 잔금 납부)**

※ 모집호수 도달 시 접수마감하며 잔여세대는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 선착순 계약 첫날은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충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 검증 및 소명기간 : 행복주택 계층은 약 2-4주 소요, 통합공공임대 일반은 약 6-8주 소요

■ **동호지정 계약 시 유의사항**

- **[접수당일 14:00 이전]**에 신청 장소에 도착한 분은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되며,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서를 결정**하게 됩니다.
- **[접수당일 14:00 이후]**에 신청 장소에 도착하신 분은 도착하신 순서대로 번호표를 부여받게 되며, 14시 전 도착자의 동호지정이 끝난 후 접수대장 작성 순서대로 동호지정이 이루어집니다.
-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선택)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업무진행자가 해당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청약접수·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청약접수·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청약접수·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으나 청약접수·동호지정을 원하는 경우 번호표를 다시 부여받아 해당순번에 따라 청약접수·동호지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일 화요일 14시 전까지 동호지정 장소에 도착한 모든 분들은 동일 순번으로 간주, 추첨을 실시하여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하므로 일찍 방문하실 필요가 없으며, 당일 신청인원이 많을 시 동호지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 공급신청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 주택열람 시 세대 내 기물, 마감재 등이 파손될 경우 열람자가 손해배상 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계약자) 본인이 구비서류(본 공고문 [5.신청서류] 참고)와 계약금을 완비하여 서류제출 및 계약금 계좌납부를 완료하여야 하며, 서류미비 및 계약금 미입금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계약금 납부는 당일 오후 4시까지 입금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일 입금확인이 불가한 경우, 계약 및 지정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계약체결 이후 동호변경 불가)
- **계약금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해당 동·호를 계약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순변심 등에 의해 자격검증 완료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계약금은 신청형(계층)별 구분 없이 50만원**이며, **현장에서 안내드리는 계좌로 입금(계약자 본인성명으로 입금)해야 하며, 현장수납은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주택소유여부 등)을 검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되며,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자격검증 적격자의 단순변심 해지는 위약금 부과)**
- 금회 모집은 먼저 계약을 하고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선계약·후검증 계약자 확약서'와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의 기입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자격검증 이후 적격자에게 정확한 입주일을 순차적으로 개별안내 해드립니다.
- 계약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증과 이에 따른 입주시기는 전산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습니다.

3.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형별	공급대상		금회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기간 (년)
				주거전용	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천원)	월 임대료 (원)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계	계약금	잔금					
21A (빌트인)	청년	소득無	48	21.83	11.4806	2.7246	9.2853	45.3205	12,614	500	12,114	57,810	(+) -	12,614	57,810	10
													(-) 10,000	2,614	86,970	
		소득有							13,356		12,856	61,210	(+) -	13,356	61,210	
													(-) 11,000	2,356	93,290	
	산업단지 근로자								14,840		14,340	68,010	(+) 1,000	15,840	63,010	10~14
													(-) 12,000	2,840	103,010	
	고령자								14,098		13,598	64,610	(+) -	14,098	64,610	20
													(-) 11,000	3,098	96,690	
	통합공임 일반								14,840		14,340	68,010	(+) 1,000	15,840	63,010	4~6
													(-) 12,000	2,840	103,010	
26A	청년	소득無	98	26.58	13.9787	3.3175	11.3056	55.1818	14,654		14,154	67,160	(+) 1,000	15,654	62,160	10
													(-) 12,000	2,654	102,160	
		소득有							15,516		15,016	71,110	(+) 2,000	17,516	61,110	
													(-) 12,000	3,516	106,110	
	산업단지 근로자								17,240		16,740	79,010	(+) 3,000	20,240	64,010	10~14
													(-) 14,000	3,240	119,840	
	고령자								16,378		15,878	75,060	(+) 3,000	19,378	60,060	20
													(-) 13,000	3,378	112,970	
	통합공임 일반								17,240		16,740	79,010	(+) 3,000	20,240	64,010	4~6
													(-) 14,000	3,240	119,840	
26B (주거약자)	고령자 (주거약자용)		32	26.58	13.9787	3.3175	11.3056	55.1818	16,378		15,878	75,060	(+) 3,000	19,378	60,060	20
													(-) 13,000	3,378	112,970	

★ 본 단지는 임대료 100% 보증금 전환(전세) 선택이 가능하며, 동호지정 계약체결(가계약)시 선택가능 합니다. 단, 추후변경 불가함 ★

- **월 임대료 할인**
 - 금번 공고를 통해 입주한 사람의 경우 **입주일이 속한 해당 월부터 3개월분(입주 날짜와 관계없이 입주일이 포함된 해당 월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임대료 지급 채무를 면제**합니다. (예시: '26.12.20일에 입주한 경우 '27.02월까지 임대료 면제)
 - 계약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것이 아닌 임대료 지급 채무를 면제하는 방식이므로 형별 임대조건이 상이함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 않으며, 전환보증금 납부 세대의 경우 조정 후 임대료만큼만 지급 채무 면제되고 전세 전환하여 계약 체결하는 세대의 경우 별도의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조 및 난방방식은 벽식 및 개별난방이며,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26B)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5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신청대상 : 65세 이상)**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21형의 주택에는 가스쿡탑(2구형), 냉장고(소형) 등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전세전환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계약체결시 전세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시 기본 임대조건(보증금+임대료)으로 결정 후 전세조건으로 계약조건 변경 불가함)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대는 입주 후 퇴거시까지 임대조건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공급형별	공급대상		전세보증금(원)
21A (빌트인)	청년	소득無	24,176,000
		소득有	25,598,000
	산업단지 근로자		28,442,000
	고령자		27,020,000
	통합공임 일반		28,442,000
26A	청년	소득無	28,086,000
		소득有	29,738,000
	산업단지 근로자		33,042,000
	고령자		31,390,000
	통합공임 일반		33,042,000
26B(주거약자)	고령자(주거약자용)		31,390,000

*계약금은 5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 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해당공고에 한해서 무주택 요건 완화(포항시에 주택이 없는 경우, 소형·저가주택 허용)**

***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대상자는 완화 제외**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을 인정하며, 재혼 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4-1. 청년 계층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①-㉮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①-㉯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인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금회 모집의 경우 **소득 요건 배제**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조건		금회 조건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4,576,036원 이하	120%	소득 요건 배제
	2인	6,452,897원 이하	110%	
	3인	8,168,429원 이하	100%	
	4인	8,802,202원 이하	100%	
	5인	9,326,985원 이하	100%	
	6인	9,906,263원 이하	100%	
세대원(본인)	1인	4,576,036원 이하	120%	

④ 금회 모집의 경우 **총자산 요건 배제**. 단,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금액 이하**일 것

구분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자동차가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0인	45,420,000원
	2인	0인	45,420,000원
		1인	49,960,000원
	3인 이상	0인	45,420,000원
		1인	49,960,000원
		2인 이상	54,510,000원
세대원(본인)	1인	0인	45,420,000원
	2인	0인	45,420,000원
		1인	49,960,000원
	3인 이상	0인	45,420,000원
		1인	49,960,000원
		2인 이상	54,510,000원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을 적용**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①-㈏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①-㈏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①-㈏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청년계층**'**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구분	해당세대 범위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신청자 본인

※ 신청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4-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①-㉮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①-㈐ **(한부모가족) 9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또는 **9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③ 금회 모집의 경우 **소득 요건 배제**

구분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조건		금회 조건
신혼부부·한부모가족	2인	6,452,897원 이하	110%	소득 요건 배제
	3인	8,168,429원 이하	100%	
	4인	8,802,202원 이하	100%	
	5인	9,326,985원 이하	100%	
	6인	9,906,263원 이하	100%	
맞벌이 신혼부부	2인	7,626,151원 이하	130%	
	3인	9,802,115원 이하	120%	
	4인	10,562,642원 이하	120%	
	5인	11,192,382원 이하	120%	
	6인	11,887,516원 이하	120%	

④ 금회 모집의 경우 **총자산 요건 배제**. 단,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금액 이하**일 것

구분	맞벌이 여부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자동차가액 기준
한부모가족	X	2인	0인	45,420,000원
			1인	49,960,000원
		3인 이상	0인	45,420,000원
			1인	49,960,000원
			2인 이상	54,510,000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X	2인	0인	45,420,000원
		3인	0인	45,420,000원
			1인	49,960,000원
		4인 이상	0인	45,420,000원
			1인	49,960,000원
			2인 이상	54,510,000원
	○	2인	0인	45,420,000원
		3인	0인	45,420,000원
			1인	49,960,000원
		4인 이상	0인	45,420,000원
			1인	49,960,000원
			2인 이상	54,510,000원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 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신청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4-3. 고령자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65세 이상인 자

① 금회 모집의 경우 **소득 요건 배제**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조건		**금회 조건**
1인	4,576,036원 이하	120%	**소득 요건 배제**
2인	6,452,897원 이하	110%	
3인	8,168,429원 이하	100%	
4인	8,802,202원 이하	100%	
5인	9,326,985원 이하	100%	
6인	9,906,263원 이하	100%	

② 금회 모집의 경우 **총자산 요건 배제**. 단,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금액 이하**일 것

구분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자동차가액 기준
고령자	1인	0인	45,420,000원
	2인	0인	45,420,000원
		1인	49,960,000원
	3인 이상	0인	45,420,000원
		1인	49,960,000원
		2인 이상	54,510,000원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고령자'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4-4. 산업단지근로자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교육·연구기관 및「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사람으로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 (단,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사람만 해당)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포항시) 또는 연접지역(경주시, 영천시, 청송군, 영덕군)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 **근무** 중일 것

* 입주예정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산업단지관리주체(산업단지공단 등)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금회 모집의 경우 **소득 요건 배제**

구분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일반조건		**금회 조건**
일반 산단근로자	1인	4,576,036원 이하	120%	소득 요건 배제
	2인	6,452,897원 이하	110%	
	3인	8,168,429원 이하	100%	
	4인	8,802,202원 이하	100%	
	5인	9,326,985원 이하	100%	
	6인	9,906,263원 이하	100%	
맞벌이 산단근로자	2인	7,626,151원 이하	130%	
	3인	9,802,115원 이하	120%	
	4인	10,562,642원 이하	120%	
	5인	11,192,382원 이하	120%	
	6인	11,887,516원 이하	120%	

③ 금회 모집의 경우 **총자산 요건 배제**. 단,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금액 이하일 것**

구분	맞벌이 여부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자동차가액 기준
산단근로자	X	1인	0인	45,420,000원
		2인	0인	45,420,000원
			1인	49,960,000원
		3인	0인	45,420,000원
			1인	49,960,000원
			2인 이상	54,510,000원
		4인 이상	0인	45,420,000원
			1인	49,960,000원
			2인 이상	54,510,000원
	○	2인	0인	45,420,000원
		3인	0인	45,420,000원
			1인	49,960,000원
		4인 이상	0인	45,420,000원
			1인	49,960,000원
			2인 이상	54,510,000원

④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산업단지근로자**'**의 해당세대**란

해당세대	비고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혼인 중이 아닌 경우 입주자 본인의 주택소유 여부 및 본인이 속한 세대의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산정

※ 산업단지근로자 계층은 본인이 **근무 중인 기업에 산업단지 입주여부를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4-5.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대상자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과 자산요건을 갖춘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자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대비(이하)	
	월평균소득금액	**기 준**
1인	4,359,205원 이하	170%
2인	6,718,867원 이하	160%
3인	8,038,554원 이하	150%
4인	9,742,107원 이하	150%
5인	11,335,079원 이하	150%
6인	12,833,928원 이하	150%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일 것

※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의 해당 세대**

해당세대	비고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분리배우자 포함)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③,④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하며, ⑤는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에 한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접수 당일 발급받은 서류에 한함)

신청일로부터 입주후 퇴거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신청일부터 입주 후 퇴거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사양식)**-현장제공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동의방법 :** 공고 시 첨부된 동의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내용 확인 후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14세 미만의 자 :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공사양식)**-현장제공 *통합공임 일반계층만 제출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공사양식)**-현장제공 *통합공임 일반계층 한함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확약서 **(공사양식)**-현장제공	•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 확약서 • 선계약 후검증 계약자 확약서	각1통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 및 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 **"청년 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반드시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신청인 **본인기준으로 발급**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거소)사실증명서등 해당서류 추가제출	1통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신청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신혼부부,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의 자격으로 주택을 신청하는 신청자 중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청년 계층	청년 (19세이상~ 39세이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공단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국민연금공단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지방고용노동청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 '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자만 제출	• **신청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해당 직장(세무서)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이 경과한 사람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사람** **-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해당 학교
		• 신청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 제출(미제출 시 입주불가)	
신혼부부	신혼부부	•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및 한부모 계층	예비 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혼인 후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발급, 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추가 제출 (미제출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 처리됨)	공사양식 공사양식
	해당자만 제출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산업단지 근로자		• 입주업체확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고일 재직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1년 이상 근무(예정) 기간 소명 자료 추가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팩토리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직장 주민센터

■ 입주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대상	부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통장 사본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1통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	1통

6.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트,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 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 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 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직권조사 등록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7.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입주자격 완화	■ **입주 자격 완화 사항** ***통합공공임대 일반공급대상자는 제외** **▪ 소득요건 완화** ◦ 소득요건 배제 **▪ 자산요건 완화** ◦ 총자산요건 배제 * 자산가액 중 **자동차 가액기준은 완화대상이 아님** **▪ 기간요건 완화** ◦ 청년 계층 : 소득종사기간 **7년 이내**일 경우 가능 ◦ 신혼부부 계층 : 혼인기간 **10년 이내**거나 자녀연령 **9세 이하**일 경우 가능 ◦ 한부모가족 계층 : 자녀연령 **9세 이하**일 경우 가능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금번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소득▪총자산배제)하여 계약한 사람 및 통합공임 일반공급 대상자로 계약한 사람의 경우**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금번 공고로 입주자격을 완화(무주택요건)하여 계약한 사람의 경우** 신청일 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2회차까지 재계약을 체결 할 수 있고, 3회차 이후 재계약시 종전 주택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한 경우는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청년 계층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고령자 계층	20년
산업단지근로자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재청약 기준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으로 입주 시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 등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청년계층의 경우 19세이상 39세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7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10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9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인함
- **완화요건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은 1회만 가능(무주택요건완화는 2회 가능)하며, 재계약 만료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 1회의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할증없음)**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통합 일반공급 대상자로 입주한 자가 갱신계약시 통합 일반공급 소득기준(기준중위 소득 150%)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 할증표를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할증하여 부과**

<table>
<tr><td></td><td>
<table>
<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
<tr><th>최초 갱신계약 시</th><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tr>
<tr><td>10%이하</td><td>110%</td><td>120%</td></tr>
<tr><td>10%초과 30%이하</td><td>120%</td><td>130%</td></tr>
<tr><td>30%초과</td><td>130%</td><td>140%</td></tr>
</table>
•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청년 계층'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td></tr>
<tr><td>신청자격</td><td>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신청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청년 계층은 신청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td></tr>
<tr><td>중복입주 금지</td><td>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td></tr>
<tr><td>신청 서류</td><td>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d></tr>
<tr><td>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td><td>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변경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적격 소명 안내, 계약 및 입주안내 등을 받지 못하고 당첨 및 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td></tr>
<tr><td>포항블루밸리 지구 및 단지특성</td><td>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단지 여건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지하 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3m입니다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팜플렛 등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조경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td></tr>
</table>

	• 단지 명칭, 동번호, BI(Brand Identity)로고 및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 모집 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는 이사가 불가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LNG)이며, 욕실에는 난방시설이 없습니다. • 구조는 콘크리트 벽식 구조입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 도로변 세대는 일부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는 전 세대가 복도형으로, 사생활 침해 및 개방감 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상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DA,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세대에는 시설물 작동 시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시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 측벽, 입면등의 디자인 변경과 문양은 현장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여건 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사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및 옥상난간대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 상 단지외 도로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진입도로는 1개로 차량 운행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해 한전 가공으로 아파트에 인입됩니다. • 아파트 옥탑 측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 측에 피뢰침이 설치됩니다. • 도난이나 기물 파손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인 택배함은 동출입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내부에 천정 공기 유입은 에어컨(냉방 장치)이 아닌 환기 팬에 의한 것입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보안등, 가로등과 차량의 소음, 차량 진출입에 따른 경보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저층 세대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측에 TV 시청을 위한 공청, 위성 안테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됩니다.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공동현관기를 부착하여, 경비원 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 하, 오수, 도시가스, 한전 등) 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 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340대(지상 172대, 지하 166대, 상가 2대)이며, 주차구획 위치 및 대수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기는 7개소(급속 1개소, 콘센트형 6개소)가 설치됩니다.**
- 단지 내에는 재활용 보관소, 기계, 전기실(발전기실) 급·배기구, DA(환기구), 어린이 놀이터 휴게소, 옥외운동시설, 자전거보관소 등의 시설물과 경비실, 복합커뮤니티시설 등의 건축물이 설치될 예정으로 동별 이동거리가 상이하여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일조, 조망, 발전기 가동 배출가스, 냄새 및 해충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걸이 TV 등의 설치 시 매립배관 위치를 시공자가 관리소 보관중인 준공도면을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부주의로 인한 배관파손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 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문양은 현장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복도 등의 벽체마감(마감두께 등)으로 인하여 본 아파트의 시공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대는 동(전후 측면 등) 인근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는 시야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개인취향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 엘리베이터 승강장 지하 부분 홀 및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인접 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팸플렛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특허 및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으며 또한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부도, 관계법령 등에 위촉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계약자의 개별동의는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 팸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렛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주방가구, 신발장 등 가구설치부위에는 벽체 및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는 조립식 시스템욕실로 시공되며, 바닥 및 벽체 재질에 따라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 및 냉장고 콘센트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욕실장, 주방가구, 신발장 후면·하부 등 비노출 부위(벽체 및 바닥 등)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 발코니 등에서 바닥 단차는 시공 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후 세대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셔야합니다. 특히, 발코니 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첫해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욕실 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욕실환기를 해야 합니다. 욕실환기 미비, 거실, 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겨울철 기온이 급강하 시 발코니 및 실외기실 내부에 수도동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발코니 내부에 에어컨 실외기실이 있으며 실외기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팸플렛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렛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가구 등 구입시에는 입주자사전 방문기간을 이용하여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세대내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고 인접세대로 탈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가 발코니에 설치되며, 소음이 발생하거나 전달될 수 있습니다.(비상탈출구 경량벽체에는 탈출에 방해되는 물건적치를 엄금함)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형태에 따라 마감 노출로 인하여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며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합니다.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며 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조명기구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이 사용될 예정이며 팜플렛 등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 시 선정된 업체에 따라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여부,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8.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구 분	등 급
녹색건축	일반(그린4등급)

9.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단지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포항블루밸리 행복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외건설(주) ㈜삼건사	-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건일엠이씨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10.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장애인, 휠체어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주거약자 전체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동체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전체세대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주거약자 전체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주거약자 전체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의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ㅡ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씽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폰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비디오폰 점자표지	비디오폰(월패드) 단축버튼 점자표지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및 가족) 확인서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팀	
임대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당첨자 ARS	1661-7700
인터넷 청약	· PC :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8.

대구경북지역본부